제420회국회(임시회)
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등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 추가 >
▣ 최보윤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908호)

2025. 1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전문위원 전완희

목 차

Ⅰ. 제안경위 ····· 1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····· 1

Ⅲ. 검토의견 ····· 2

1.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등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 추가(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) … 2

Ⅰ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: 최보윤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: 2024. 11. 27.

다. 회 부 일: 2024. 11. 28.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 또한,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 제8호의2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등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 추가(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)

가. 개정안 요지

○ 개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“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·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”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·② (생 략)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1. ~ 8. (생 략) <신 설> 9. ~ 10. (생 략) ④·⑤ (생 략)	제5조(기금의 용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8의2.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·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 9. ~ 10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다. 검토사항

○ 문화체육관광부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장애인·고령자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[1)]

- 2015년부터 관광지의 주차장, 이용·편의시설, 화장실, 보행로 시설 등을 장애인, 고령자, 영유아동반가족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'열린관광지'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,[2)]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보조하는 투어케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, 장애인 대상 여행체험 프로그램 운영, 고령자와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여행 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진 중임.[3)]

- 또한, 2022년부터는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와 숙박·식음료·쇼핑 등 편의시설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이 제약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'무장애 연계성 강화' 사업도 추진 중임.[4)]

---

1)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(장애인·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·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※ 2024.12.31. 제420회(임시회)제3차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이 의결되어,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 활동 지원의 대상이 '다자녀가구'로 확대되었음(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).
제47조의4(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2) 열린관광지 조성: '15년부터 '23년까지 132개소 조성, '24년 30개소 조성 중
3) 투어케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: '23년 240명,
장애인·고령자 대상 여행체험 프로그램: '23년 556명
고령자의 주도적 여행을 장려하는 '꿈꾸는 여행자' 운영: '23년 720명
취약계층 청소년 문화관광체험 여행 지원: '23년 6,500명
4) 2022년 강릉시, 2024년 울산광역시를 선정하여 지원 중임.

○ ‘2023년 국민여행조사’에 따르면, 2023년도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95.5%,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6.47회임. 이에 비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국내여행 경험률이 90.3%,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3.77회,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국내여행 경험률이 90.4%, 1인 평균 국내 여행 횟수가 3.64회로, 고령자, 저소득층의 경우 관광활동 비율이 전 국민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- 또한 ‘2023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(문화관광연구원)’에 따르면 장애인 국내여행 경험률이 55.9%로 장애인의 경우 관광활동 비율이 전 국민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.

- 특히 동 조사에서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관광지까지 교통편의성 개선(1순위, 41.1%), 관광지 내 이동 편리성 개선(2순위, 34.9%), 장애인 편의시설의 신규 조성과 유지·관리·개선(5순위, 28.2%) 등이 꼽혀,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불편 없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에서의 편의 제고와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○ 그런데 현행법상 장애인·고령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지원 사업의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등에서의 ‘교통 및 편익시설의 설치사업’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- 현행법 제5조제3항은 관광기금의 대여 및 보조 대상 사업으로 관광정보 제공사업, 관광홍보사업, 관광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,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.[5]

○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지 등에서의 "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"이라는 구체적인 보조대상 사업군을 명시함으로써,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·고령자,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[6]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임.

-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관광 접근성, 편의성 등을 보완함으로써 이들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○ 다만, 개정안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의 대상지를 "관광지·관광단지 및 관광특구"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관광지·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[7]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관광지점(spot)[8]의

---

5)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추진 중인 '열린관광지 조성 사업', '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'의 경우 제5조제3항제8호에 따른 "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"으로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.

6) '열린관광지 조성 사업', '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'에는 장애인, 고령자, 영유아,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 개보수, 시티투어버스 운영, 렌터카·택시 등 민간사업자 참여지원 등을 통한 관광교통 편의성 강화, 교통수단 승하차 시설 설치

7) 「**관광진흥법**」 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 "**관광지**"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

일부에 불과한 바,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를 관광지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 접근성·편의성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- 또한, 현행 제5조제3항제6호에서 기금의 용도로 '관광지·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'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동 조항에 관광지 등에서의 장애인 등 편익시설 설치사업은 포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.

- '열린관광지 조성 사업', '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'의 경우에도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관광지·관광단지 등의 지역이 아닌 광범위한 관광지점 단위로 추진 중임.[9]

- 따라서, 개정안에 따른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의 대상지를

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.

7. "**관광단지**"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.

11. "**관광특구**"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,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·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.

※2024년 말 기준 관광지는 225개소, 관광단지는 51개소, 관광특구는 35개소(14개 시·도)가 지정되어 관리 중임.

8) 「2023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」(문체부)에 따르면, "관광지점"은 「관광진흥법」 등 관광관련 법령*을 근거로 분류된 주요관광지점 범위** 중 지자체 관광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지점으로 선정된 곳으로 관광목적의 비일상적 이용이 주된 목적인 시설 또는 공간을 의미하며, 2023년 기준 2,752개소임.

* 관광관련 법령: 관광진흥법, 문화재 보호법,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, 온천법, 자연공원법,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39개 법령

** 주요관광지점 범위: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 등(관광진흥법), 유형문화재·무형문화재 등(문화재 보호법), 박물관·미술관 등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), 관광농원·주말농원 등(농어촌정비법 등)

9) 예를 들면,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경우 강릉시, 울산광역시에 속한 관광지점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 중임.

관광지 등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'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'으로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○ 또한, 개정안은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수혜자를 '장애인 등 소외계층'으로 한 바,[10]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 해석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'소외계층'이라는 용어를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4, 제47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'관광취약계층'[11]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377

10) 개정안은 현행 제5조제3항제8호의 국민관광 복지사업의 대상이 '장애인 등 소외계층'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.

11) 「관광진흥법」 **제47조의4(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7조의5(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